

사회복지현장실습 협약서

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이하 “학교” 라 한다. _____은 이하 “실습기관” 이라 한다. 학교와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1. 본 협약은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기술, 지식, 태도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학교와 실습기관의 상호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2.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실습기간까지 유효하다.
3. 학교는 효율적인 실습과 실습기관 방침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(가) 학교는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방침과 규정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.
 - (나) 학교는 실습지도와 운영에 관하여 실습전후에 실습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.
 - (다) 학교는 실습기간 전에 학생들에게 실습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.
 - (라) 학교는 실습기간 중 실습담당 지도교수를 파견하여 학생의 실습 이행과정을 지도한다.
4. 실습기관은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.
 - (가)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의 사용을 허용하며 학생의 실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.
 - (나) 실습생의 실습지도는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수퍼바이저가 실시하고 평가내용을 학교에 통보한다.
 - (다)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지켜야 하는 _____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학교와 사전협의하여 해당 실습생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5.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대표자가 각각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월 일

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



_____기관장